
 금융위원회	<h1>보도자료</h1>			 금융감독원
	보도	2016.4.14(목) 16:00 이후	배포	
책임자	금융위 은행과장 이윤수 (02-2156-9810)	담당자	김윤희 사무관 (02-2156-9812)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구경모 (02-3145-8020)		김준환 은행인허가팀장 (02-3145-8035)	
	금감원 일반은행국장 민병진 (02-3145-7050)		박상원 건전경영총괄팀장 (02-3145-7055)	

제 목 : 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변경예고 -

■ 금융규제개혁 관련 발표사항 등 제도화

-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규제 폐지, 비업무용 부동산 임대 가능
- 은행법령상 열거된 겸영업무 외에도 타 금융법령상 인·허가 받은 업무는 바로 영위 가능(네거티브적 규율체계 도입)
-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자기자본의 3배→5배) 및 단기채(만기 1년미만) 발행 가능
-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자기자본의 15%→20%)

■ 개정된 「은행법」 위임사항 규정(3.29. 공포, 3~4개월 경과후 시행)

-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관련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재무건전성 제고
-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사고 예방대책,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구체화

1. 개정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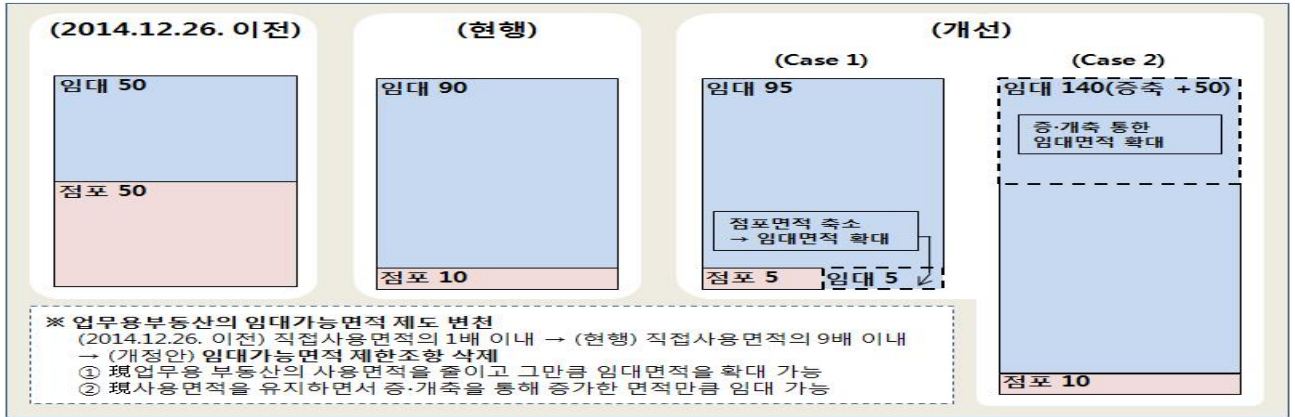
-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15.8월) 등 금융규제개혁 발표사항* 등을 제도화하여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
- *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검토결과」(14.7.24),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15.8.13),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15.10.29),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15.12.3)
-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등 「은행법」(이하 ‘法’) 개정(16.3.29. 공포, 3~4개월 경과후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은행법 시행령」(이하 ‘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이하 ‘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에 규율

2. 주요 내용

< 금융규제개혁 발표사항 등 제도적 정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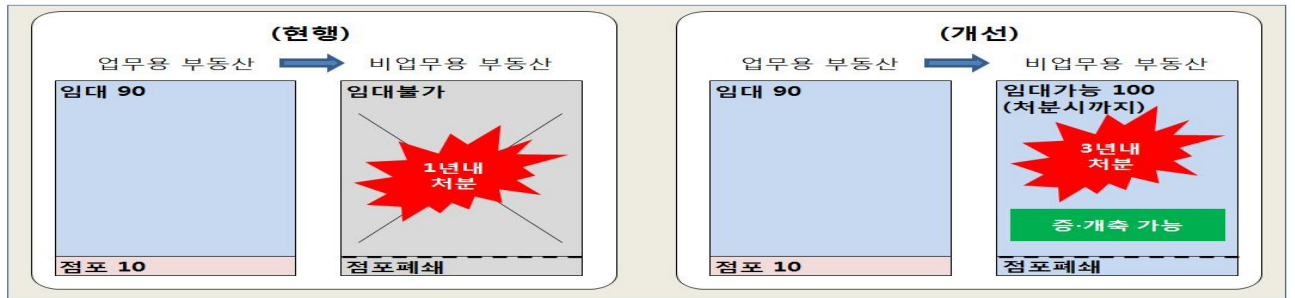
□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제한 폐지 등 부동산 운용 관련 넓은 규제 전면 개선

- ① 영업점 건물에 대한 임대면적 규제 : (현행) 임대가능 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 → (개정) 임대면적 규제를 폐지하여 점포규모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외 공간 임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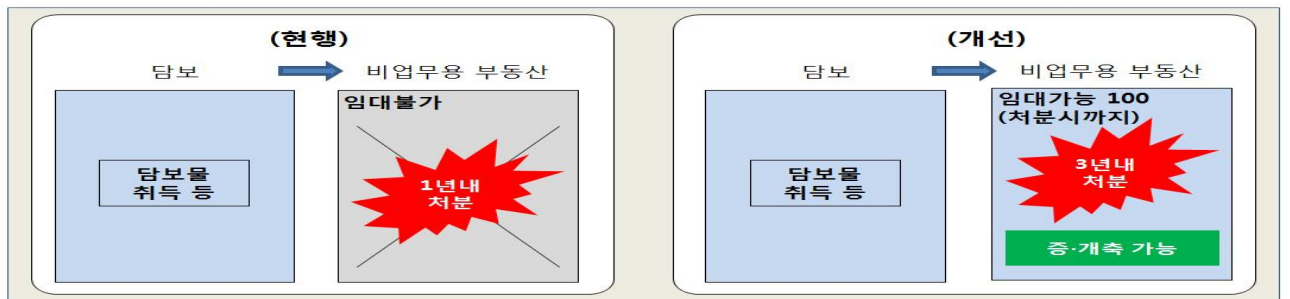


- ② 점포 폐쇄 후 임대 : (현행) 점포 폐쇄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이후에는 임대가 불가능하고 1년 이내 처분 → (개정) 처분기한을 확대 (1년→3년)하고,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처분 전까지 임대 가능

* 은행 국내점포수(개): ('13말) 7,599 → ('14말) 7,401[△198] → ('15말) 7,278[△123]



- ③ 비업무용 부동산 처리 : (현행) 담보물 취득시 1년 이내 처분 필요 (임대 불가능) → (개정) 처분 전까지 임대 가능(3년 이내)



⇒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탄력적·효율적인 점포운영과 수익성 제고 가능

□ 경영업무 영위시 네거티브적 규율체계 적용

- (현행) 은행법규상 경영가능 업무를 일일이 열거* → (개정)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업으로서 인허가·등록받은 업무 영위 가능

* 수익원 다변화, 핀테크 등 新융합서비스 출현 등 변화된 환경에 적기 대응이 어려움

- 은행에 타 금융관련법령상 업무를 인허가할 때 금융시장 안정성 및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은행법령에 추가 열거하고 중복검토할 필요성 미미)

⇒ 타 금융법상 인허가 정책,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적시에 업무 다각화

[사례예시] 최근 은행에 일임형ISA 판매를 허용하면서 은행 경영업무 범위에 투자일임업을 추가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16.3월) → 향후에는 타 금융법령상 은행에 금융업무 인·허가시 바로 영위 가능(사전적으로 은행법규 추가 개정 불요)

□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 및 상환기간 제한 폐지

- (현행) 은행채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3배 이내 → (개정) 은행법상 상한인 5배 이내로 상향 조정

* 은행채 발행잔액(일반은행 기준, '15년말): 92.8조원(총예수금의 8.3%)

* 은행채 발행비중(자기자본 대비, '15년말): 평균 65.4%(최저 24.0%~최고 114.7%)

- (현행) 은행채 상환기간은 1년 이상 → (개정) 상환기간 제한 삭제

⇒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으로 자금조달시 자율성이 확대되고, 단기채(만기 1년 미만) 발행도 가능하게 되어 만기구조 다양화 및 조달비용 절감

□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 조정

- (현행)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제한 → (개정) 은행법상 상한인 20% 이내로 상향 조정

* 자회사 출자비중(자기자본 대비, '15년말): 평균 7.0%(최저 3.7%~최고 12.5%)

⇒ 해외진출 등 출자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선제 정비

[사례예시] A은행은 종전 지주계열사가 은행 자회사로 변경되면서 자회사 출자규모가 증가하여 향후 적극적인 해외진출 추진에 애로 소지 → 출자한도 상향시 해외현지법인 설립 등 신규출자 수요 발생시 탄력적 대응 가능

□ 외은지점 신설시 외화자금 매각상대방 자율화

- (현행) 외국은행이 국내지점 신설시 영업기금 마련을 위한 외화자금 매각 상대방을 한은으로만 한정* → (개정) 한은 및 국내은행으로 확대

* '66년 도입시 외환보유액 확충 등을 목적으로 매각상대방을 제한하였으나 현시점에서는 제도 실효성이 낮음(갑기금 관련 매각규모는 '09년 이후 연간 1~3억달러 수준에 불과)

⇒ 국내진입하는 외국은행의 외환거래 자율성을 제고하여 진입을 용이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수단도 확대

[사례예시] 작년 4분기 인가받은 3개 외국은행(스테이트뱅크오브인디아(SBI, '15.10월), 인도네시아네시아은행(BNI, '15.11월), 중국광대은행('15.12월))은 외화를 한은에 매각하여 영업기금 마련 후 금년 1분기 영업개시 → 향후 국내진입 외국은행은 가격, 중장기 업무관계 등을 고려하여 한은 및 국내은행 중 유리한 매각상대방 선택 가능(진입 원활화 요인으로 작용 예상)

□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

- (현행) 외은지점의 경우도 원화대출금이 2조원을 초과하면 예대율 규제(원화대출금/예수금 \leq 100%)를 적용받게 되어 기업금융 활동에 애로 → (개정) 본·지점간 장기차입금*(만기 1년 초과)은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으로 인정(일반적인 시장성수신과 달리 자금이탈 가능성이 낮음을 감안)

⇒ 외은지점의 기업금융 관련 불합리한 영업상 애로를 해소하고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

[사례예시] 개인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M 외은지점은 예수금 규모가 작으므로 대출자산이 커지면 구조적으로 예대율 충족이 불가능 → 예대율 산정시 본·지점간 장기차입금이 예수금에 포함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 활동을 영위 가능

□ 기타 제도정비

- 장외파생상품 판매 관련 자본시장법과의 중복규제 삭제, 꺾기 규제 대상에 일임형ISA 추가, 수협에 대한 바젤Ⅲ 적용시기 유예('16.12월 → '17.12월), 은행임직원 대출규제 면제대상에 오피스텔 추가

< 법 위임사항 >

□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조건·방법 및 절차

*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예정사유(trigger event)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전환형)되는 사채

○ (法) 상각형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 (승)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및 교환 효력발생일*** 등 규정

* 발행 관련 대부분 사항을 자본시장법 및 상법상 발행조건 및 절차, 예탁증권등 권리 행사, 주주에 대한 신주 배정 등 관련 규정 준용

** [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 → [감독규정] (i)부실금융기관 지정, (ii)경영개선명령, (iii)기타 발행인이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 충족시 중 어느 하나

*** 10영업일 [상각형 및 은행주식 전환형은 3영업일(자본시장법 준용)]

□ 자본금 감소 승인신청서 주요사항 및 첨부서류

○ (法) 금융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자본금 감소를 신고사항에서 승인 사항*으로 강화 → (승) 승인신청서 주요사항 및 첨부서류** 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참조)

* [승인요건] (i)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 (ii)재무구조 개선목적 등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iii)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 [주요사항] 자본금 감소목적, 변동내용, 절차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 자본금 감소 전후 대주주 현황, 재무제표, 자본금 감소방법 및 일정표 등

□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 구체화

○ (法)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 행위 금지의무 신설 → (승) 유형 구체화*(규정에 있던 내용을 승으로 상향)

* 자기앞수표 선발행 등 무자원입금거래, 사금융행위·조세포탈·회계분식·부당내부거래·자금세탁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직·간접적 관여 등

□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사고 예방대책 반영시 포함될 사항

- (法) 내부통제기준에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 반영의무 신설 → (승) 예방대책 주요사항* 구체화(규정·세칙에 있던 내용을 승으로 상향)

* 도난 등에 대비한 자체경비 강화대책, 국외점포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금융사고 안전대책, 고객 신용정보 유출사고 예방대책 등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 (法) 고객의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직원보호조치 필요(은행·보험·자본·여전·저축은행 5개법 공통사항) → (승) 구체적인 조치사항* 규정

* 피해직원 요청시 형사고발, 관할수사기관 신고, 직원에 행정적·절차적 협조와 지원, 예방교육

3. 향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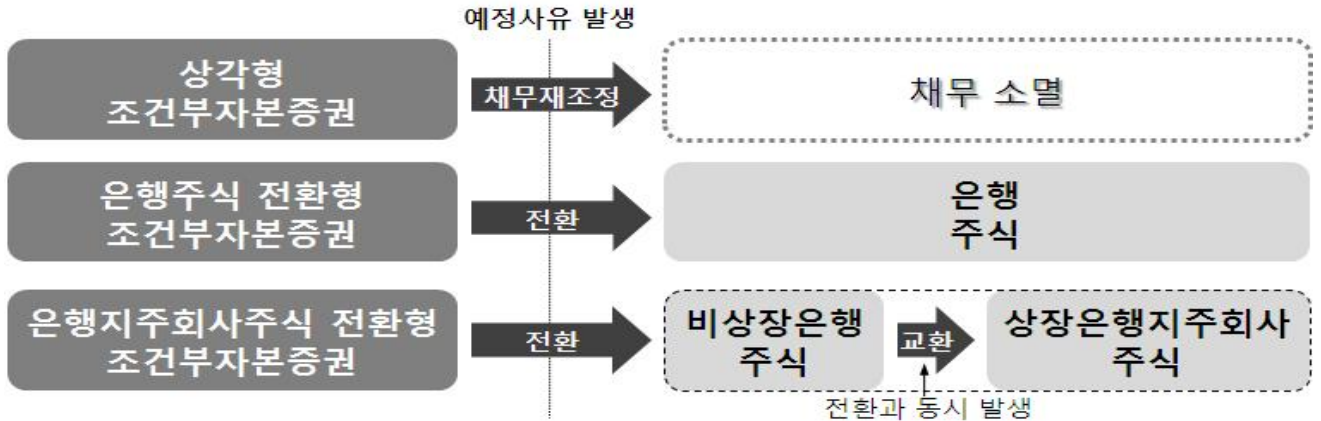
- 입법예고(4.14.~5.4.) 이후 규제위·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7.30일 시행 예정(자회사 출자한도 상향 및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는 6.30일)

※ 금융개혁 관련 추가 입법사항(「은행법 개정안」)은 상반기 중 마련 예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
--	---	--	-------------------------------	---

구분	규율방식	주요업무
고유업무 (법 제27조)	Positive 방식 [신고불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내국환·외국환
부수업무 (법 제27조의2)	Negative 방식 [부분 신고제] * 열거된 업무는 신고불요 * 열거된 업무 이외에도 신고를 통해 시장수요에 맞게 탄력적 대응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 상호부금(相互賦金) ·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 보호예수(保護預受) · 수납 및 지급대행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등 · (현행)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 (개정) 부동산의 임대 (단,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처분할 때까지 임대 가능) ·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입장권 등의 판매대행 · 은행의 물적설비를 활용한 광고대행 등 · 은행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요건: ①은행의 경영건전성, ②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 ③금융시장 등의 안정성 각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함
겸영업무 (법 제28조)	(현행) Positive 방식 → (개정) Negative 방식 [신고제]	① 타 금융관련법령에서 인·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법] 파생상품 매매·중개, 파생결합증권 매매, 국채등의 인수·매출, 국채등의 매매, 국채등의 모집·매출 주선,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 및 중개, 환매조건부 매매, 신탁업,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일반사무관리회사, 명의 개서대행회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ISA) 관련 투자일임업 · [보험업법] 보험대리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사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업 · (현행) 열거방식 → (개정) 타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금융업무로서 인·허가 및 등록을 받은 업무 추가(네거티브화) ② 타 금융관련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③ 기타 금융업무(비본질적 겸영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화자산 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 수탁 · 기업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 · 기업 경영·구조조정·금융 관련 상담·조력 · 증권외 투자 및 대차거래(貸借去來) 업무 ·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의 매출 · 금융상품 및 무역보험,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판매 대행 · (현행) 대출중개 → (개정) 대출 및 대출채권매매 중개 · 국외지점 소개국가 법령에 따라 해당지점이 영위가능한 업무 · 신용정보서비스, 상법에 따른 사채관리회사 업무

- (개념)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예정사유(trigger event)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전환형)되는 사채
- (유형) ①상각형, ②은행주식 전환형, ③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 * ①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이자지급 의무가 감면
- ②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 주식으로 전환
- ③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 주식으로 전환된 후 은행지주회사 주식과 교환 (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가 비상장은행을 100% 완전 지배하는 경우에만 발행 가능)

- (바젤Ⅲ와의 관계)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은 각각 '기타기본자본(Tier1)' 및 '보완자본(Tier2)'으로 인정

* 자본 = 기본자본(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 + 보완자본

-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권은 '13년 이후 매년 10%p씩 자본에서 상각('22년 이후 전액 불인정)

- (발행현황) '15년말 기준 국내은행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잔액은 7.4조원 ('13년 이후 발행분 4.6조원), 후순위채는 35.7조원('13년 이후 발행분 14.9조원)

< 국내은행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현황 >

(단위 : 억원)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13년	'14년	'15년	'13년	'14년	'15년
발행잔액(연도말)	90,138	65,736	73,541	448,976	353,167	356,934
발행금액(연중)	25,070	1,600	13,868	71,613	42,588	34,800
('13년 이후 누계)	(25,070)	(26,670)	(45,538)	(71,613)	(114,201)	(149,001)